

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

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



목재 가구 제조업

▶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게 되나요?

»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.

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, ②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·이행되어 있지 않을 때 처벌받습니다.(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)

①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

우리 업종에서 실제 발생한 사고사례를 확인하고 같은 사고가 사업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.

▶ 목재 가구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(사망사고) 사례는 무엇인가요?

» 목재 가구 제조업종에서 최근 5년('18~'22년)간 전체 18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
: 떨어짐 5, 부딪힘 3, 끼임 3, 맞음 2, 넘어짐 2, 기타 3

떨어짐

'19.3. 목재에 방수포를 덮는 작업 중 2.5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



사고를 예방하려면?

- 이동식비계, 고소작업대 등 안전한 작업발판 사용
- 안전모 착용,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
- 추락위험 장소 근로자 출입금지

부딪힘

'18.8. 원목을 오르던 중 근로자가 넘어지면서 굴러 떨어지는 원목에 부딪혀 사망



사고를 예방하려면?

- 자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·지탱
-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정 높이로 적재
- 적재된 원목 오름 금지

맞음

'18.7. 목재 합판 재단 중 합판이 반발하여 복부에 맞아 사망



사고를 예방하려면?

- 목재가공용 등근톱기계에 반발예방장치 및 톱날접촉예방장치 설치
- 물체가 훔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시 보안경 등 보호구 착용
- 안전작업방법 및 목재 취급에 관한 사항 등 사전 교육 실시

※ 해당 사례는 사망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사례 위주로 작성(경미한 부상 사례는 제외)

이것만은 기본!

- ① 작업장 정리정돈은 반드시 실시하세요.
- ② 업무시작 전에는 꼭 안전사고 위험작업과 준수(주의)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세요.
- ③ 위험한 곳에는 꼭 안전표지판, 안전스티커를 설치·부착하세요.
- ④ 직원 중에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할 담당자를 지정하여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상태를 체크하세요.
- ⑤ 목재 가공 등 소음·분진 발생 작업 시 귀마개·귀덮개, 방진마스크 등 보호구를 꼭 착용하세요.



업종별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안내 (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누리집)



2024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

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요!

※ 동 내용은 중소기업 이해를 돕기 위해 '22년 배포한 가이드(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QR코드 참고)를 간소화하여 작성한 자료이며, 상세한 법적의무사항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및 「중대재해처벌법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「중대재해처벌법」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·이행 사업주 핵심 의무사항(목재 가구 제조업)

2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것

- » 「중대재해처벌법」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·이행 의무사항 총 15가지 중 **핵심 의무사항을 안내**하니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**할 수 있는 것부터**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!!
 - ▶ 안전보건관리체계란?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·이행하고,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.
- »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아래 핵심 의무사항을 **최소 반기 1회는 체크해보세요!!**

핵심 의무사항 하나!

»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여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알립니다.

- ▶ **예시** ◀ 아래는 예시임에 따라 사업장 실정에 맞게 수립 가능
(방침) “우리 작업장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,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.”
(목표) “떨어짐, 깔림 등 사고 00건 감소”, “매월 우리 사업장의 숨은 위험 00건 찾기” 등
(공유·전파)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수시로 사업주의 의지를 알리고, 근무 공간이나 휴게실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

우리 사업장은?	
예	아니오
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
핵심 의무사항 둘!

»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지정합니다.

- 상시근로자 20~50인 미만 사업장 중 제조업, 임업, 하수, 환경, 폐기업 5개 업종에 한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(권고사항) 다만, 법적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가 없더라도 안전을 관리·담당하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하여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(겸직 가능, 사업주(대표)가 수행 가능)
- ▶ **예시** (20인 미만 제조업 등 법적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) 전체 공정(작업) 관리 직원을 안전보건 관련 업무 수행 직원으로 지정

우리 사업장은?	
예	아니오
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
핵심 의무사항 셋!

»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(비용)을 사용합니다.

- 여력이 있는 범위에서 적은 금액이라도 안전 예산(비용)을 편성하여 지출내역을 별도로 관리하면 됩니다.
- 사전에 지출할 계획이 없더라도 안전용품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면 됩니다.
- ▶ **예시** 개인보호구(귀마개·귀덮개, 방진마스크, 안전모, 안전화, 안전장갑 등) 지급, 동근통기계·띠통기계 등 반발예방장치, 톱날접촉예방장치, 덮개·울 및 재단·가공 동력기계 비상정지장치 등 설치·보강, 지게차 등 운반기계 정비·점검, 안전표지판(출입금지, 위험장소 경고 등) 설치, 근로자 특수건강진단, 작업환경측정(분진 등),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비용 등

우리 사업장은?	
예	아니오
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
핵심 의무사항 넷!

» 우리 사업장의 유해·위험요인을 찾아서 개선하는 활동(위험성평가)을 합니다.

- 부상 등으로 이어질 뻔한 상황(아차사고) 보고 등 근로자 안전제안제도를 운영(건의함, 게시판 등 설치)하고, 유해·위험요인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개선하는 등 사업장 실정에 맞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됩니다.
- 위험성평가 방법, 서식 등은 위험성평가 시스템(오른쪽 QR 참조)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- ▶ **예시** 사업장을 순회하면서 유해·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하는 과정에 근로자 의견을 듣고, 개선 및 주의사항을 근무 시작 전 조회시간, 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알리고 근무 공간, 휴게실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



위험성평가 관련 자료 안내

- ▶ **유해 위험요인 예시**
 - ⊙ 목재, 자재 등 적재 장소에 사다리를 이용하여 올라가거나 제품 상·하차를 위해 차량 적재함에서 작업할 경우 떨어짐 위험
 - ⊙ 원목, 제품 등 적재물 무너짐으로 인한 깔림 위험
 - ⊙ 재단·가공 기계 가동 중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정비·보수·청소 작업 시 끼임 위험
 - ⊙ 동근통기계를 이용하여 절단 작업 중 가공물 반발로 인한 맞음 위험, 톱날 등 회전날에 의한 절단·베임 위험
 - ⊙ 지게차를 이용한 원재료 입고, 제품 출하 작업 시 부딪힘·끼임 위험
 - ⊙ 사상·연마 작업 시 소음, 분진으로 인한 건강장해 위험

우리 사업장은?	
예	아니오
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
핵심 의무사항 다섯!

» 산업재해에 대비하여 비상매뉴얼을 만들고, 산업재해가 있었던 경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합니다.

- ▶ **예시** 화재 등 비상대응 매뉴얼(비상대피도, 비상연락망, 이송 병원 등) 마련, 이전에 발생한 사고별 재발방지대책 마련

우리 사업장은?	
예	아니오
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